

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포항시보

제797호 2010. 9. 21(화)

◀ 입법예고 ▶

○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(제2010-861호) 2

◀ 고 시 ▶

○구룡포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(제2010-81호) 14

◀ 공 고 ▶

○도로지정 공고(제2010-207호) 22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입법예고

포항시 공고 제2010- 861 호

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 제41조」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포 항 시 장 박 승 호

2010. 9. 20.

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최근 지속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친서민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면제 (안

제12조의3제1항제3호)

-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부 수정
- 행정서식변경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등

3. 규칙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이 규칙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0. 10.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(참조: 재정관리과장, 주소: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, 전화 270-2493, 팩스 270-2490, e-mail: park4526@korea.kr)에게 서면,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- 다. 기타 필요한 사항 등

5. 기 타

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(<http://www.ipohang.org>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법 제64조에 따른” 으로 하고,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시장” 을 “포항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” 으로 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도지사” 를 “경상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 라 한다)” 로 한다.

제12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소상공인(취득가액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)

제12조의3제2항 중 “50인” 을 “50명” 으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각호의 1” 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제1호 내지 제3호” 를 “제1호부터 제3호까지” 로 한다.

제17조제3항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각호의 1” 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 로 한다.

제25조제1항제4호 중 “기타 정부” 를 “그 밖에 장부” 로 한다.

제28조제2항 중 “각호의 1” 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 로 한다.

제30조 본문 중 “각호의 1” 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3월 미만” 을 “3개월 미만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기한) 제12조의3제1항제3호는 공포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.

제3조(경과규정)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2조의3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 기간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새로이 3년동안 적용한다.

■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【별지 제1호 서식】

영 치 증

법인명(상 호)						
소재지(사업장)						
대표자(성 명)				생년월일	년	월 일
영 치 사 유						
영 치 기 관						
영 치 기 간	년 월		일부터	년 월 일 까지		
영치 공무원	소속		직급		성 명	
입 회 인	소속		직		성 명	
서명날인 거부사유						

「조세범처벌 절차법」 제5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위와 같이 영치합니다.

년 월 일

포 항 시 장 (직인)

210mm×297mm [일반용지60g/m²(재활용품)]

■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【별지 제2호 서식】

영 치 목 록

일련번호	물건명	수 량	제 출 자	소 유 자	비 고

210mm × 297mm [일반용지60g/m²(재활용품)]

■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【별지 제3호 서식】

예 치 증

법인명(상 호)						
소재지(사업장)						
대표자(성 명)				생년월일	년	월 일
예 치 사 유						
예 치 기 간	년		월	일부터	년 월 일 까지	
입 회 인	소속			직	성 명	

「조세범처벌 절차법」 제5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위와 같이 예치합니다.

년 월 일

[예치공무원] 소 속 :
직 급 :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포 항 시 장 (직인)

■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【별지 제4호 서식】

예 치 목 록

일련번호	물건명	수 량	제 출 자	소 유 자	비 고

210mm × 297mm [일반용지60g/㎡(재활용품)]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 “세무조사” 라 함은 <u>법 제64조의</u> <u>규정에 의한</u> 질문, 검사권에 의하여 조사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, 서류, 기타 물건을 검사,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「조세범처벌절차법」에 의한 범칙사건 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</p> <p>2. “조사공무원” 이라 함은 <u>시장</u>으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지방세공무원을 말한다.</p> <p>3. ~ 7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<u>법 제64조에</u> <u>따른</u>----- ----- ----- <u>-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2. -----<u>포항시장(이하 “시장</u> <u>이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</p> <p>3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조사대상자의 구분선정)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및 납세의 성실도, 업종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되,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에는 <u>도지사</u>에게 의뢰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8조(조사대상자의 구분선정) -- ----- ----- ----- --<u>경상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</u> <u>라 한다)</u>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의3(영세·성실기업에 대한 세</p>	<p>제12조의3(영세·성실기업에 대한 세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무조사 면제) ① 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신 설</u>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	<p>무조사 면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<u>중소기업기본법</u>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「<u>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</u>」에 따른 소상공인 (취득가액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50명----- ----- -----</p>
<p>제17조(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시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제1호 내지 제3호</u>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필요한 사항</p>	<p>제17조(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제1호부터 제3호까지</u>-----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④ (생략)</p> <p>제20조(수색, 영치의 금지) ①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「조세범처벌절차법」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세무조사(특별조사를 포함한다)시에는 납세의무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, 서류 등을 영치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0조(수색, 영치의 금지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5조(준비조사) ①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정부 및 수집자료 등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25조(준비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장부 -----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8조(조사보고) ① (생략)</p> <p>②조사공무원은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상황을 “조사중간보고서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복명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28조(조사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0조(세무조사 결과 통지)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</p>	<p>제30조(세무조사 결과 통지) 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시일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에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조사결과에 통지를 하고자 하는 날 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</p> <p>3. (생략)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3개월 미만</u>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
고 시

포항시 고시 제2010 - 81호

구룡포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

「산업단지 인·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15조 규정에 의거 구룡포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고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4 및 제19조의2, 「토지이용 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
포항시장 박승호

2010년 9월 21일

1. 산업단지의 명칭·위치 및 면적

- 명 칭 : 구룡포일반산업단지
- 위 치 :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, 하정리 일원
- 면 적 : 994,655㎡

2. 산업단지의 지정목적

- 계획적인 산업입지 공급을 통하여 포항철강단지 및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포항시 남부지역의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함

3.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

- 성 명 : (주)광 남 (대표 황보정국)외 1개사
- 주 소 : 포항시 남구 대도동 138-18번지

4.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

- 개발기간 : 2010년 ~ 2013년
- 개발방법 :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3호 및 시행령 제19조 제 2항 1호 나목에 의한 민간개발

5.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

- 1) 주요 유치업종
 - 1차금속 제조업
 - 금속가공제품 제조업

2) 업종별 배치계획

업종구분		면적(m ²)	구성비(%)	비고
합 계		691,915	100.0	
C24	1 차 금 속	435,346	62.9	
C25	금속가공제품	256,569	37.1	기계및가구제외

3) 업종별 배치계획도 (개재생략)

6. 토지이용계획

1)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면 적(m ²)	구성비(%)	비 고
합 계	994,655	100.0	
산 업 시 설 용 지	691,915	69.6	
1 차 금 속 제 조 업	435,346	43.8	
금 속 가 공 제 품 제 조 업	256,569	25.8	기계및가구제외
지 원 시 설 용 지	5,263	0.5	
지 원 시 설	5,263	0.5	
공 공 시 설 용 지	297,477	29.9	
도 로	102,318	10.3	8% 이상
주 차 장	6,638	0.7	0.6% 이상
유 수 지	14,711	1.5	저류시설
수도공급설비	7,250	0.7	배 수 지
공 원	9,750	1.0	5% 이상
완 충 녹 지	156,810	15.7	

2) 토지이용계획도 (계재생략)

7.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

가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조서

① 포항시 용도지역 총괄조서

구 분	면 적(m ²)			구성비 (%)	비고		
	기 정	변 경	변경후				
합 계	1,224,847,000	-	1,224,847,000	100.00			
도 시 지 역	소 계	388,471,341	-	388,471,341	31.72		
	주 거 지 역	37,227,724	-	37,227,724	3.04		
	1종일반주거지역	4,738,723	-	4,738,723	0.39		
	2종일반주거지역	18,379,700	-	18,379,700	1.50		
	3종일반주거지역	10,618,317	-	10,618,317	0.87		
	준 주 거 지 역	3,490,984	-	3,490,984	0.28		
	상 업 지 역	4,981,593	-	4,981,593	0.41		
	일반상업지역	4,981,593	-	4,981,593	0.41		
	공 업 지 역	34,764,819	증)994,655	35,759,474	2.92		
	전용공업지역	13,957,823	-	13,957,823	1.14		
	일반공업지역	15,768,965	증)994,655	16,763,620	1.37		
	준공업지역	5,038,031	-	5,038,031	0.41		
	녹 지 지 역	214,565,070	감)923,816	213,641,254	17.44		
	보전녹지지역	2,502,730	-	2,502,730	0.20		
	생산녹지지역	14,752,574	-	14,752,574	1.21		
	자연녹지지역	197,309,766	감)923,816	196,385,950	16.03		
	미 지 정 지 역	96,932,135	-	96,932,135	7.91		
	관 리 지 역	소 계	219,777,535	감)38,137	219,739,398	17.94	
		보전관리지역	81,345,793	감)38,137	81,307,656	6.64	
		생산관리지역	44,797,200	-	44,797,200	3.66	
계획관리지역		93,634,542	-	93,634,542	7.64		
농 립 지 역	589,580,355	감)32,702	589,547,653	48.13			
자연환경보전지역	27,017,769	-	27,017,769	2.21			

※기정은 포항 신흥일반산업단지 승인 고시문 (포항시 고시 제2010-44호, 2010. 06. 01)

②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면 적(㎡)		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
공 업 지 역	-	증)994,655	994,655	
일반공업지역	-	증)994,655	994,655	
녹 지 지 역	923,816	감)923,816	-	
자연녹지지역	923,816	감)923,816	-	
관 리 지 역	38,137	감)38,137	-	
보전관리지역	38,137	감)38,137	-	
농 립 지 역	32,702	감)32,702	-	

나.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구분	도 면 표 시 번 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44	구룡포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, 하정리 일원	-	증)923,655	923,655		

다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

□ 교통시설

1) 도 로

① 총 괄 표

류 별	합 계			1 류			2 류			3 류		
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
합 계	13	6,985	112,935	2	885	9,437	6	1,258	20,614	5	4,842	82,884
대 로	1	1,900	47,951	-	-	-	-	-	-	1	1,900 (350)	47,951 (8,743)
중 로	8	4,072	54,779	-	-	-	6	1,258	20,614	2	2,814	34,165
소 로	4	1,013	10,205	2	885 (185)	9,437 (1,874)	-	-	-	2	128	768

주) ()는 구역외 부분. (구역내 : 102,318㎡, 구역외 : 10,617㎡)

②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 장 (m)	기 점	중 점	사 용 태	주 경 과 지	최 초 결 정 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대로	2	29	30	주 간선도로	9,193	하정리 구역계	동해IC	일 반 도로	국 도 31호선	경 북 고 제101-288호 (2001.09.25)	지구외 노 선 소
변경	대로	2	29	30	주 간선도로	8,895	하정리 구역계	동해IC	일 반 도로	국 도 31호선		
신설	대로	3	28	25	보 조 간선도로	1,900	34호 광장	중 로 2-168	일 반 도로			지구 외 350m
신설	중로	2	165	15	집산도로	60	대 로 3-28	중 로 3-148	일 반 도로			
신설	중로	2	166	15	집산도로	277	대 로 3-28	중 로 3-148	일 반 도로			
신설	중로	2	167	15	집산도로	242	대 로 3-28	중 로 3-148	일 반 도로			
신설	중로	2	168	15	집산도로	139	대 로 3-28	소 로 1-2	일 반 도로			
신설	중로	2	169	15	집산도로	294	대 로 3-28	중 로 3-149	일 반 도로			
신설	중로	2	170	15	집산도로	246	대 로 3-28	중 로 3-149	일 반 도로			
신설	중로	3	148	12	집산도로	1,586	대 로 3-28	중 로 2-168	일 반 도로			
신설	중로	3	149	12	집산도로	1,228	중 로 2-169	중 로 2-170	일 반 도로			
신설	소로	1	1	10	국지도로	388	대 로 3-28	중 로 2-169	일 반 도로			

2) 주 차 장

구분	도 면 표 시 번호	시 설 명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 정 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84	노외주차장	구룡포읍 병포리 산103-1번지 일원	-	증)3,251	3,251		
신설	85	노외주차장	구룡포읍 병포리 산121-3번지 일원	-	증)3,387	3,387		

□ 공간시설

1) 광 장

구 분	도 면 시 표 시 번 호	시 설 명	시 설 의 세 분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 설	34	광 장	교통광장	구룡포읍 병포리 산95-1번지 일원	-	증)26,822	26,822		입 체 교차로

2) 녹 지

구 분	도 면 시 표 시 번 호	시 설 명	시 설 의 세 분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 설	225	녹 지	완충녹지	구룡포읍 병포리 산121-1번지	-	증)53,565	53,565		
신 설	226	녹 지	완충녹지	구룡포읍 하정리 산201번지	-	증)103,245	103,245		

3) 공 원

구 분	도 면 시 표 시 번 호	공 원 명	시 설 의 세 분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 설	199	병 포 소공원1	소공원	구룡포읍 병포리 산103-1번지	-	증)4,465	4,463		
신 설	200	병 포 소공원2	소공원	구룡포읍 병포리 산126-1번지	-	증)5,287	5,287		

□ 유통 및 공급시설

1) 수도공급설비

구 분	도 면 시 표 시 번 호	시 설 명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 고	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	
신 설	18	수도공급설비		구룡포읍 병포리 산121-3번지 일원	-	증)7,250	7,250		배수지

□ 방재시설

1) 유수지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19	유수지	저류시설	구룡포읍 병포리 산103-2번지 일원	-	증)4,216	4,216		
신설	20	유수지	저류시설	구룡포읍 병포리 376-1번지 일원	-	증)10,495	10,495		

8.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

가. 용수공급계획

- 총 용수 수요량 : 3,443㎥/일 (공업용수 3,253㎥/일, 생활용수 190㎥/일)
- 공업용수는 대상지 서측 국가산업단지(포항블루밸리)에서 31번국도 구룡포 방향으로 본 산업단지에 인입
- 생활용수는 기존 구룡포로 인입되는 관로에서 분기하여 본 산업단지로 인입

나. 오·폐수처리계획

- 오·폐수 발생량 : 1,897㎥/일 (오수 153㎥/일, 폐수 1,754㎥/일)
- 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수는 개별공장에서 1차처리 후 포항시 차집관로에 연결하여 구룡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

다. 폐기물처리계획

- 총 폐기물발생량 : 39.13톤/일
- 본 산업단지의 운영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은 재활용, 소각, 매립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고, 나머지 폐기물에 대해서는 경제성 및 환경오염 등을 감안하여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함

라. 전기공급계획 : 인근 상정변전소에서 전력공급

마. 도시가스계획 :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공급

바. 통신공급계획 : KT 포항지사에서 공급

9. 산업단지 지정 지형도면고시도 : 붙임도면 게재생략

-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률』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

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함

10. 수용·사용할 토지·건축물 등 세목조서 (붙임조서 참조)

11. 관련도서 열람방법

- 관계도서는 포항시 도시계획과(☎054-270-350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(관계도서 게재생략)

공 고

포항시 복구청 공고 제 2010 -207 호

도로지정 공고

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그 위치를 지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포항시 복구청장

2010. 9. 16

1. 건명 : 도로의 지정
2. 도로의 위치지정내용

대지위치	도로지번	지정면적(m ²)	도로길이(m)	도로너비(m) (평균값)	지정일자	비고
포항시 북구 홍해읍 칠포리 904-1번지	홍해읍 칠포리 904-5번지	16.0	17.0	4.0	2010.09.16	

3. 도면 : 북구청 건축지적과 비치

문의처 : 건축과(054-240-7484)